연금저축손해보험
LIG매직연금저축보험(L9.11) 보통약관

제 1 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또한 보험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일로부터 최종연금지급일까지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 이하『피보험자』라 합니다) 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은 청약일,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진단일을 말합니다)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예정이율 >

보험회사는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대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해 두는데 보험료 납입시점과 보험금 지급시점에는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보험회사는 적립된 금액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에 따라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러한 할인율을 『예정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예정이율이 높아지면 보험료는 낮아지고, 예정이율이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제2조(청약의 철회)

1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이하 『보험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② 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이외에 보험계약성립 후부터 보험기간 중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계약자가 보험년도(보험계약일로부터 1년씩 경과되는 매년의 계약해당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는 연간 납입하는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합니다.

제4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계약내용의 변경)

1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①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급지급기간
② 보험료 수금방법 및 납입기간
③ 기본보험료
④ 기타 계약의 내용

2 계약자는 제1항 제1호의 연금지급개시시기 및 연금지급기간을 연금지급 개시전에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경우 그 감액된 부분을 해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

1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17조(해약환급금)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회사의 다른 연금저축 또는 다른 금융기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를 통하여 계약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의 지시(자산연 6155-00007, 2001.1.11) 및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약환급금, 미경과 보험료적립금 등 제지급금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이전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계좌이체하여 드립니다.

4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의거 기타소득세 및 해지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이전을 제한합니다.

① 이전신청일이 속한 분기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1인당 납입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이전받을 금융기관에서의 거절)
② 계약이전 후 기존계좌와 통합을 하는 경우
③ 계약을 분할(금액분할)하여 이전하는 경우
④ 압류, 가압류 또는 질권 등이 설정된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압류, 가압류 등 법적으로 지급이 제한된 계약

·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되지 않은 계약

⑤ 다음의 계약을 이전하는 경우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장해연금을 지급하고 있거나 보험료의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계약

·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지 않은 계약

6 계약자가 이미 실효된 이 보험의 계약을 다른 연금저축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된 후에 한하여 이전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7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1 이 계약은 관련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납입한 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이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라 합니다)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연금저축보험료 소득공제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매년 불입한 금액(퇴직연금 보험료를 포함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함)의 누계액에 2%를 곱한 금액을 해지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사망에 의한 계약해지는 기간구분 없이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는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 천재·지변

② 계약자의 퇴직

③ 계약자의 해외이주

④ 계약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폐업 또는 계약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폐업

⑤ 계약자의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⑥ 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3 계약자가 연금지급이 개시되기 이전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금소득세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 관련세법의 개정시 개정내용을 따릅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계약을 지속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때까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 이하 『수익자』라하며, 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9조(보험나이)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시 18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연금지급개시나이가 55세 이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판단은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제10조(특별계정의 운용)

① 회사는 1개 이상의 특별계정 (2개 이상의 특별계정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특별계정』이라 하고, 1개이상의 특별계정을 총칭해서 『특별계정』이라 합니다)을 설정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에 대해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기초하여 운용합니다.

② 제1항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른 특별계정이 설정되기 이전에는 일반계정에서 일반보험의 자산과는 별도로 구분계리하여 운용합니다.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11조(보험료의 납입 및 한도)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보험계약 성립일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② 이 계약의 월 기본보험료의 납입한도는 100만원으로 하며,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의 분기별 합계액은 300만원 이내(모든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저축의 합계액을 말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기본보험료 미납입으로 해지되어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예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부활(효력회복)보험료를 납입할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보험료 한도내에서 분기별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보험료납입 중지제도에 관한 사항)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장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유지를 원할 경우 회사의 승낙을 얻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체결 후 10년 이상 납입한 계약에 한합니다.

제13조(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정한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계약자가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을 서면신청한 경우 제25조(보험계약대출)에 규정된 보험계약대출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적으로 대출되어 계약이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이자(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를 더한 금액이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기타 계약자에게 지급할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로 자동납입되는 기본보험료는 1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계약자의 서면에 의한 재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그 청구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회사는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② 기본보험료 수금방법이 회사의 방문수금 또는 계약자의 은행 수납방법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의 방문수금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지

로 등)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회사가 다시 수금하기로 하거나 은행납입통지서(지로 등)를 다시 드리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또는 다시 드린 날부터 15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합니다.

3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안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4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5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2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관 보험금 등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제16조(연금의 지급)

계약자가 보험료를 완납한 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종료시점에서 계약이 유효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된 연금을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 동안 매년 계약해당일에 계약자(계약자 사망시에는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

1 이 보험의 책임준비금 및 연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이하 「보험상품군별(연금-0911) 공시이율」이라 하며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5년 이하인 경우에는 3.50%, 가입후 5년 초과하고 10년 이내인 경우에는 2.75%, 가입후 10년을 초과한 경우 2.00%로 합니다)은 매월 말일 회사가 정하며,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2 제1항의 보험상품군별(연금-0911)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 지표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보험상품군별(연금-0911) 공시이율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매월 공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 >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제18조(해약환급금)

1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순보험료(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를 말합니다.)에 대하여는 회사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료 납입 경과기간에 따라 제17조(공시이율의 적용)에서 정한 보험상품군별(연금-0911) 공시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에 보험상품군별(연금-0911)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2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19조(배당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해당일이 속하는 사업년도말에 연금자산의 운용수익을 계산하여 운용수익이 적립이율에 기초한 운용수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범위내에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가 결정한 금액을 매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계약자배당준비금을 기초로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드립니다.

① 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보험금 또는 환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② 연금지급개시일이 되기 이전까지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제16조(연금의 지급)에서 정한 연금지급

방법과 동일하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하 『증액연금』이라 합니다)

③ 연금지급개시일 이후에 발생된 계약자배당준비금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자배당금을 계산하여 매회 연금에 더하여 드립니다.(이하 『가산연금』이라 합니다)

3 회사는 배당금 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 내역을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20조(소멸시효)

보험료 또는 환급금반환청구권 및 배당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소멸시효 >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없어지게 되는 기간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제21조(주소변경통지)

1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2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제16조(연금의 지급)의 연금에 대한 수익자는 계약자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제23조(환급금의 지급)

1 회사는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 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

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환급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3 회사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 연금 또는 해약환급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① 해약환급금의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② 연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까지의 기간중 보험만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적용하고, 보험만기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를 적용합니다.

제24조(계약내용의 교환)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보험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 및 보험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①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등 계약내용
③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등 지급내용
④ 피보험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25조(보험계약대출)

1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

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대출이자의 납입지연 등을 사유로 대출 대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10일전까지 계약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5 계약자가 제1항의 대출을 받은 계약으로서 제6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이전)에 의하여 계약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차감지급은 하지 않으나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이 된 경우에 한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

제5관 분쟁조정 등

제26조(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7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28조(약관의 해석)
1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29조(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장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함) 제작의 보험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30조(회사의 손해배상책임)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보장을 합니다.

제31조(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32조(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연금저축손해보험
LIG매직연금저축보험(L9.11)
제도성 특별약관

1.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부터 이 보험료 자동납입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 납입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매월 회사가 정하는 날중 보험계약자가 희망하는 일자로 합니다.

제3조(계약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가. 초회보험료자동납입 추가특별약관

제1조(보험료의 납입)

① 보험계약자는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보험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 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보험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의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1조(보험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금융기관의 해당계좌에서 제1회 보험료를 받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을 드립니다.

제2조(계약후의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3조(준용규정)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해당 특별약관 및 보험료자동납입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2. 신용카드 이용 보험료납입 특별약관

제1조(적용범위)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대리점을 통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2조(보험료의 영수)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보험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보험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3조(사고카드계약)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보험자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지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된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